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고발생 운수업체 특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 점검표 및 착안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장 1.1, 3.2, 별표1, 별표2)
- 나.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의 점검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조치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안 제2장 4.1.다)
- 다.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춰 지침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혼선이 없도록 점검 유형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함(안 제1장 2.2.1.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없음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으로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중 “정기점검”을 “일반점검”으로 한다.

제1장 2.5. 나목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장 1.1. 중 “교통안전관리, 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등”을 “일반현황,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교통사고관리, 자동차관리 등”으로 한다.

제2장 2.4.2. 가목 중 “등록”을 “등록·허가”로 하고, 나목 6) 중 “운전정밀검사”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한다.

제2장 3.1.1. 가목 1), 3.2. 가목 1) 라) 중 “규칙 제9조”를 “규칙 제7조의2”로 한다.

제2장 3.2. 가목 1) 다) 중 “중상자 3인 이상”을 “중상자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장 4.2.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특별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 사항(개선권고, 행정처분, 미조치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2장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장 1.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변경없음)
2. 버스 (변경없음)
3. 화물·위험물 운반차량 및 건설기계 (변경없음)
4. 어린이통학버스 (변경없음)
5. 개인택시 (변경없음)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점검표를 수정할 수 있다.

[별표 2]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

1. 일반현황 (변경없음)
2. 운전자 관리 (변경없음)
 - 2.1. 운전자 공통 자격요건(변경없음)
 - 2.2. 업종별 운전자 자격요건(변경없음)
3. 운행관리(변경없음)
4. 교육관리(변경없음)
5. 교통사고 예방대책(변경없음)
 - 5.1. 중대 사고보고(변경없음)
6. 자동차 관리(변경없음)
 - 6.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변경없음)
 - 6.2. 정비시설 및 인력(변경없음)
 - 6.3. 정비작업 범위(변경없음)
 - 6.4. 자동차 표시확인(변경없음)
 - 6.5. 운행기록장치(변경없음)
 - 6.6. 어린이통학버스(변경없음)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착안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p> <p>제1장</p> <p>1.2. 용어의 정리</p> <p>나.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 단에 대해 <u>정기점검</u> 등의 실 시시기 및 대상·범위 등을 정 한 해당연도의 교통수단안전 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p> <p>2.5. 점검자에 대한 교육·훈련</p> <p>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안전점검에 관한 교육·훈련과 정을 개발하고 점검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 록 「<u>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교통안전공단</u>(이하 “교통안전 공단”이라 한다)을 전문교육· 훈련기관(운수산업 교통수단안 전점검에 한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2장</p> <p>1.1.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p> <p>영 제20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자동차운송사업자·건설</p>	<p><u>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u></p> <p>나. ----- ----- ----- <u>일반점검</u> ----- ----- ----- -----.</p> <p>* 이하 지침에서 동일하게 개정</p> <p>나. ----- ----- ----- ----- ----- 「<u>한국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한국교통안전공단</u>----- ----- ----- ----- -----.</p> <p>----- -----</p>

라)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라) -----
규칙 제7조의2-----

4.2. 점검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 신 설 >

다. 교통행정기관은 특별점검 결
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사항(개선권고,
행정처분, 미조치 사유 등을 포
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
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022년 7월 1일 -----

-----.